

과 업 지 시 서

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)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지시서는 관련법에 의거한 내용 및 기타 필요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 (용역범위)

폐기물명[분류코드]	성상	배출주기 (예정)	연간발생예정량[kg]			수거방법
			고상	액상	합계	
폐유독물질 [09-00-00]	고상/액상	수시 (3회)	1,500	1,500	3,000	연구실별 방문하여 분류/포장 수거

제2조 (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)

- ① 사업자 등록업자
-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인·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자
 -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증 소지 업체
- ③ 관련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이상의 지적사례가 없는 업체
-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에 대한 수집·운반업 허가와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의 자체 또는 위탁처리 가능 업체이며 소재지가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도인 업체

제3조 (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)

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·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
- ③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

제4조 (계약서 작성 시 기재사항)

- ① 위·수탁 업체 현황(상호, 소재지, 대표자, 전화번호 등)
- ② 위·수탁계약기간
- ③ 폐기물의 수량, 성상, 취급 시 주의사항, 운반 및 처리장소, 처리방법 등 수집·운반 및

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 (수집 및 반출)

- ① 계약상대자의 수집·운반차량은 시·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, 수집·운반 및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을 수 없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서 정한 차량을 이용하여 각 연구실(실험실)과 건물별로 이동하여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·운반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의 반출 작업 시 운반중 내용물의 누설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의 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⑤ 상차비용 등 반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처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- ⑥

제6조 (상차 및 계량)

- ① 반출량의 확정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 운영 중인 계량대의 계량값으로 하며 단위는 kg으로 표시한다.
- ② 발주자의 계량대 고장으로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공인계량소 사용을 인정하며, 계량값은 kg단위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로 표시한다.(이때 공인계량소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)

제7조 (위탁대금의 산정 및 지급)

- ① 위탁대금은 처리단가[원/kg]에 계량중량[kg]을 곱한 값으로 한다.
 - 처리단가에 운반비를 포함 한다.
- ②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 반출 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(Allbaro System)을 이용한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대한 전자인계서 최종 확정 후 거래명세서를 제출 완료 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.

제8조 (전자인계서 작성)

계약상대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(Allbaro System)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에 대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 (통지의무)

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인허가 내역, 보유차량 내역 등의 변경사항이

발생된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안전관리)

-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는 면책시켜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현장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(인원, 차량, 장비 등)에게 용역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현장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고용인(인원, 차량, 장비 등)에게 발주자의 시설물 보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수반되는 모든 작업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시행 지적시 적극 개선하여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1조 (환경오염 방지대책)

-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기간 동안 폐유독물질의 누출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기간 동안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는 면책시켜야 한다.
-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고용인(작업자)에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2조 (관련법규, 관련규정의 준용 및 해석)

-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(폐기물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, 산업안전보건법, 도로교통법 등 제반 관련법)의 처리규정에 따라 해석하며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.
- ② 기타 업무처리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 (손해배상)

-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계약상대자(차량, 장비 및 고용인포함)가 발주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 (보안)

-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의 정보,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,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.
-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발주자의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대하여도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실(실험실)에 출입할 때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 발주자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이 보안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15조 (계약해지)

발주자는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하여 계속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- ②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규에 의거한 허가사항의 변경·휴업 또는 관련 법규의 위반 등으로 용역의 계속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작업이 중단될 때
- ③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속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

제16조 (기타)

- ①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의 위탁처리 계획물량과 실제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제 반출된 최종 물량으로 정산한다.
- ② 지정폐기물(폐유독물질)의 소유권은 반출 시 전자인계서를 신고한 시점부터 계약상대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.
- ③ 본 계약기간은 2018. 8. 20. ~ 2019. 6. 30.까지 한다.